

2024. 5. 23.(목)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심 사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차 례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 원안가결 (6)

<원안>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원안> 충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안>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원안>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원안>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20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29호
- 나. 제 안 자: 정용학 의원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 준용 및 포상 (안 제5조~제6조)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된 것으로,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 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
- 안 제3조~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총연맹(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총연맹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그 밖의 안 제2조~안 제3조 등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와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예산지원현황(2024기준)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			개최시기	비고
	합계	보조	자담		
계	95,250	91,000	4,250		
시지회 및 읍면동 운영보조금	55,000	55,000	-	연중	·읍면동25백만/시지회30백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18,150	16,500	1,650	4.13(토)	·레크레이션(게임)/충주체육관
6.25전쟁음식 재현 및 체험행사 등 지원	4,300	4,000	300	6.25전후	·성서동차없는거리(예정)
어울림누리 가요제	11,000	10,000	1,000	9월중	·예선 9.1. / 본선 9.29.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2,800	2,500	300	10.30전후	·호암지 위령탑
북한이탈주민돕기 송년의밤 행사	4,000	3,000	1,000	12월경	·컨벤션센터(예정)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30호

나. 제 안 자: 고민서 의원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 된 것임.
- 현재 충주시의 예술인은 총 490명이며, 그 중 청년 예술인은 70명으로 14.28%를 차지하고 있음¹⁾.
- 지역예술인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충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2024년 선정결과 총 116건이 선정 되었으며 이 중 청년이 선정된 것은 6건으로 단 5%로 불과함.

2. 선정결과

문 학				시 각					음악·다원 / 창작					총계	
생애 최초	개인	청년	단체	생애	개인	청년	전문 단체	생활 단체	개인	청년	전문		생활 단체		창작 공연
											소속	단체			
5	18	-	7	12	5	1	5	15	4	5	3	14	20	2	116

<2024년 충주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결과>

- 또한, 2024년 충주시 사회조사 결과 청년(19세~39세) 중 대다수는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예술인의 경우 고정 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 더욱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1) 충주문화관광재단 DB 기준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19세 이상)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없었다 (0 회)	별로 없었다 (1~3 회)	가끔 있었다 (4~9 회)	매우 자주 있었다 (10 회 이상)	
[전 체]	(1951)	21.0	39.6	32.7	6.7	
성별	남자	(935)	22.2	39.2	32.7	6.0
	여자	(1016)	19.8	40.0	32.7	7.5
연령별	15~19 세	(12)	24.8	41.6	16.8	16.8
	20~29 세	(137)	34.7	38.4	26.3	0.6
	30~39 세	(193)	14.7	40.9	38.7	5.8
	40~49 세	(250)	17.3	41.2	33.7	7.8
	50~59 세	(380)	22.7	38.9	31.6	6.8
	60~64 세	(252)	15.9	39.6	36.6	7.9
	65 세 이상	(727)	20.2	39.1	32.2	8.4

<2023년 충주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 예술인 중 청년 예술인의 비율 대비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비율은 높지 않으며 대다수의 청년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 가. 의안번호: 제3731호
- 나. 제 안 자: 박상호 의원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평생교육 지원센터(안 제6조)
- 위탁,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사업(안 제9조 ~ 제10조)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활, 교육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 된 것임.
- 안 제2조에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으로 규정하였음.
-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상위법령에 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사회적·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서울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경계선 지능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음.
- 학술적으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는 미국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IV)의 정의에 따라 IQ 71~84 사이의 해당하는 사람을 뜻함.
- ‘안 제6조’ 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 관련 사업은 대상자 선정, 비교적 느린 학습 능력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가족상담,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은 기존의 행정 영역에 없던 사업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 경계선지능인은 인구 정규 분포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59%로 추정되며²⁾ 전체 인구의 5.1%인 등록 장애인 264만1

천명³⁾의 3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교육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제도화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3. ~ 7. (생략)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2) 사단법인 느린학습과시민회(2023)

3)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23)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 가. 의안번호: 제3732호
- 나. 제 안 자: 충주시장(세정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납세편의(전자송달,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자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안 제11조)
 - 전자송달: 장당 300원 → 500원
 - 자동이체: 장당 300원 → 50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 장당 600원 → 1,000원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제안 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송달, 자동이체 단독 신청의 경우 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500원으로 확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장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1,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임.
- 2023년 기준 전자송달은 5,484건, 자동이체는 24,524건, 전자송달+자동이체는 8,450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액은 9,381천원임.
- 세액공제 금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에 맞고 세액공제 확대금액이 지방세 전체 수입 대비 미미한 금액으로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혜택제공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 가. 의안번호: 제3733호
- 나. 제 안 자: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상위법령 체계 정비로 국가유산기본법 등(구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용어 등을 적용하여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상위법령 체계 정비로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된 명칭·용어 미반영 조례 정비 : 13건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용어, 법령 등을 수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충주시 건축 조례」 등 총 13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3. 5. 16.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4. 5. 17. 시행 되었으며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충주시 조례의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13개 조례 외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이상 2개의 조례 역시 제개정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2개의 조례를 추가 개정할 경우 조례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야 함.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u>문화재</u>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u>국가유산</u>으로 -----.</p>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p> <p>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p>	<p>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p>

로 한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생략)

⑦ ~ ⑨ (생략)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p>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u>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u>----- ----- ----- -----.</p>
--	--

[관련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 가. 의안번호: 제3738호
- 나. 제 안 자: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5월 22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5월 22일
 -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가 출연한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충주고구려비전시관 별관 활성화 사업(역사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체험장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위치: ①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279-9(감노로 2318)
충주고구려비전시관 별관 1층 (131.1㎡)
- 수허가자: 충주문화관광재단 ※ 충주시 출연기관
- 허가목적: 업무시설(체험장)
- 허가면적: 131.1㎡

○ 사용기간: 2024. 5. ~ 2026. 1. (2년 8개월)

○ 감면추계액: 8,629천원

□ **사용료 감면 추계액**

(단위 : 천원, m²)

소재지	전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2년 8개월간	8,629
중앙탑면 용전리 279-9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별관)	131.1	2024. 5. 1. ~2024. 12. 31.	2,157
		2025. 1. 1. ~2025. 12. 31.	3,236
		2026. 1. 1. ~2026. 12. 31.	3,236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충주고구려비전시관 별관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충주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충주고구려비전시관 별관 사용료로 약 3,030천원을 지불함.

재산위치	사용기간	사용료(원)	비 고
충주고구려비전시관 별관	2023. 1. ~ 2023. 4	1,005,660	
	2023. 5. ~ 2023. 12	2,024,620	
계		3,030,280	

<2024년 충주문화관광재단 고구려비 전시관 납부 내역>

-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공유재산법」 제5조 상 행정재산이며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충주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공 법인으로 의회 동의를 있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306-01) 운영비에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포함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임대료(211-02)로 세입조치 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 손실은 사실 상 없다고 판단 됨.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충주문화관광재단의 문화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제5조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 4.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